



교원계약제임용규정

제정일	2000. 3. 1
개정일	2016.10. 1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학산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교원의 신규임용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제임용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조교수 이상 신규로 임용되는 모든 전임교원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원(외국인전임교원, 강의전담전임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, 임시교원 등)에게 적용한다. (개정 2012. 7.22, 2013. 3. 1)
- ② (삭제 2013. 3. 1)
- ③ (삭제 2013. 3. 1)
- ④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계약 당사자인 해당교원과 학교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임용기로 결정된 경우
- ⑤ 신규임용 당시 설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중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결정된 경우
- 제 3조 (계약의 체결) ① 임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용권자와 계약임용예정 교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한다.
- ② 임용권자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계약임용 예정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③ 계약의 내용에는 임용직급, 임용기간, 보수, 재계약에 관한 사항, 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- ④ 임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.
- ⑤ 보수에 관한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교 교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5. 8. 1)
- 제 4조 (계약임용기간) ①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(단, 신규임용의 경우 2년)으로 하며, 1년마다 재계약한다. 단, 부교수 이상일 경우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(개정 2012. 7.22, 2015. 8. 1)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의 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원’의 계약 임용기간은 2년(단, 신규임용의 경우 1년)으로 하며, 1년마다 재계약한다. (개정 2013. 3. 1, 2015. 8. 1)
- ③ 계약임용된 교원이 재임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변동된 직급의 임용기간을 적용한다.
- ④ 제2조 제5항에 해당되는 교원 중 신규임용 당시 부여받은 직급의 임용기간과 계약 임용기간이 일치되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임용되는 직급의 임용기간을 재계약기간으로 하며 신규임용 당시 부여받은 직급의 임용기간이 계약임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신규임용 당시 부여받은 직급의 임용기간에서 계약임용기간을 뺀 잔여기간을 재계약 기간으로 한다. 단, 부교수 이상일 경우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관한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수에 한하여

매년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.

제 5조 (직급) ① 계약제임용 교원의 직급은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학산학원 및 본교 제 규정 중 교원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 및 교육경력, 강의능력, 전공영역 활동실적, 학생지도 능력에 따라 직급을 차등 적용 시킬 수 있다.

제 6조 (보수) ① 계약제임용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 교원 보수 산정 지침 및 본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. (개정 2016.10. 1)

②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수는 연봉액으로 하고 매월 25일 균등 분할 지급한다.

③ 계약제임용 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, 연금, 건강보험료 등 관련법상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은 본교에서 원천 징수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계약교원 중 2년 미만 근속한 교원이 계약 만료 전 면직되거나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,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⑤ 연봉제 계약교원이 학교법인 학산학원 정관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휴직과 직위해제에 해당된 경우에는 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분할 한 월 보수액을 봉급의 기준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⑥ 연봉제 계약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보수를 인상하여 계약할 수 없다.

○정직 : 18월 ○감봉 : 12월 ○근신 또는 견책 : 6개월

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인상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수인상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수인상 제한기간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⑧ 연봉제 계약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는 보수액을 징계처분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.

○정 직 : 보수의 2/3를 감액 ○감봉 : 보수의 1/3를 감액

제 7조 (연금 및 건강보험) ① 계약제임용 교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한다.

② 계약제임용 교원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.

제 8조 (재임용과 재계약) ① 계약임용된 교원은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결정되어야 한다.

②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 통보없이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의 결정은 대학의 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한다.

④ 재임용 또는 재계약된 교원의 종전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한다.

제 9조 (의원면직 및 사직) ① 계약 임용된 교원은 계약기간 중 원칙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. 다만,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정신적, 신체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다.

② 계약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거나 본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제10조 (관련규정의 적용)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계약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법인정관 및 본교 제반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당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